

사단법인

한국도예협회 정관



Korea Ceramic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도예협회 정관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예협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소재지	제2조 (소재지) 한국도예협회의 주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에 둔다.
목적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내 외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도자 기술을 유지, 전하고 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도자 문화의 미래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유의 전통 도자 기술 유지발전, 2. 교류 활동을 통해 도자 문화의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 3. 교류, 지원 활동을 통한 문화 향유권 확대, 4. 정책개발을 통해 올바른 미래방향 제시, 5. 교육 활동을 통한 작가발굴 등 창의력 향상, 6.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균형 있는 사회문화발전 제시, 7. 기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시회, 세미나)
	제2장 회원
회원의 자격 및 구분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회의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4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1, 2, 3, 4항 중 1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1,도자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자로 협회 사업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자, 2,대학전공 포함 경력의 자, 3,문화, 예술정책, 디자인 전문인 자, 4,이사 2인과 지부장의 추천을 득한 자, 5,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대로 한다.

	2, 단체회원 광역시, 도의 지부 및 그 산하의 지회를 단체회원으로 한다. 단체회원의 승인은 기존의 2개 지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일반회원 도자를 이해하고 도자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일반인으로 도자 체험, 협회 전시, 기타 협회 사업, 등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자, 4, 명예 회원(특별회원) 도자 발전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협회에 후원을 기여한 일반인과 기업 단체 및 기업의 장, 이사 4인 이상 추천과 이사의 승인을 득한 자,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지부 대표자 1인 및 사무처장, 회원 수 20인을 단위로 1인을 추가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일반회원은 제한적 의결권을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 참여권, 4, 본회의 제공하는 수혜권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성실 납부, 전시회 판매수수료 30%
회원의 탈퇴와 상, 벌, 징계, 제명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함과 자동 탈퇴 성립, 제9조 (회원의 상, 벌)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될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3, 제7조 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제7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징계할 수 있고, 이후 기간을 준 후 제명한다. 5, 징계의 수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 (임원,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부회장 2명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과 각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감사 2인 2, 임원은 제5조 1항, 2항에 의한 정회원으로 한다. 3, 이사회의를 거쳐 특별회원 단체 중 추천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도 둘 수 있다.
임원의 선임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임원의 해임	제12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현저한 부당행위,
임원의 선임 제한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에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는 아니 된다.
상임이사	제14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를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만 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전임자의 임기를 따르지 않는다. 4. 본회의 특별한 사유로 임원선출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후임자가 선출 취임할 때까지 현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직무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7조 (회의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바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구성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구분 및 소	제19조 (구분 및 소집)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요즘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여서 메시지, 카톡으로 가능함,
특례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임원선출 정기총회는 회원 중에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의결한다.
의결정족수	제21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의 기능	제22조 (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총회의결 제적 사유	제23조 (총회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를 제한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사정

	제5장 이사회
구성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소집	제25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월 홀수달 세 번째 금요일로 정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 회의 개시 7일 전에 홍보이사에게 공지한다.
특례	제26조 (이사회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3, 이사장의 권위되거나, 기피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한다.
서면결의	제2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결의사항 시 재적 이사 과반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의결정족수	제2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의사회의결 사항	제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퇴출의 건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의 건 5, 총회 부의할 안건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규정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재산의 구분	제31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재산의 관리	제32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 제2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수입금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로 총당한다. 1, 회원의 정기회비(지부의 단체회비를 포함한다) 2, 사업에 의한 수입(수수료) 3, 보조금 및 기부금, 찬조금 4, 특별회비,
회계연도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연도	제35조 (예산연도)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결산 감사	제36조, (결산) 1, 본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으로 결산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37조,(업무, 회계 감시)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 업무감사는 1년 1회 총회 전 업무 일정을 감사한다. 2, 회계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7장 기구 구성
위원회	제38조 (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0,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받은 사항, 0, 위탁사업 기타 연대사업으로 3조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 4,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범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특별위원회는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규약안을 제정하고 독립의 예산과 결산 등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사무총국	제39조 (사무총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사무처장, 사무국장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4,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5, 사무총국의 직제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우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수	제40조,(사무직원의 보수) 사무총장과 직원에 대하여 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기타 기구	제41조,(기타 기구)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부서와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해산	제42조, (해산) 1, 본회의가 해산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정관변경	제43조, (정관변경)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제정 관례	제44조, (규칙제정과 관례) 1, 정관에 정한 그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 정관과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속부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1, 2 항 이외의 사항은 민법 또는 관례에 따른다.
단체회원 등기	제45조, (단체회원의 등기) 1, 제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부 단체를 인준한다. 1, 경기지부 : 경기도 2,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07-4 3, 강원지부 : 강원도 4, 충북지부 : 충북 5, 대구지부 : 대구 6, 경북지부 : 경북 7, 전남지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23-16
경과조치	제46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기 전 주무관청에서 인가받은 정관은 개정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내규 조항) 본회의는 회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내규 조항을 사용한다.
	부칙
부칙	이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년 2월 2일 부분 개, 보정 한다. 2023년 2월 10일 부분 개, 보정 한다.

제1회 한국도예가협회상

수상작가 : 도원요 / 박부원

수상작가	
프로필	- 경기 광주 왕실도자기 초대명장 - 작품소장: 영국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민속박물관 - 현재)도원요 대표
공적사항	지당 박부원 선생은 70년대 도원요를 설립한 이후 일본과 한국 미국을 무대로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한국전통도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왔음은 물론 본 협회가 발전해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모든 회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2023 협회를 빛낸 상

수상작가 : 서광요 / 박병호

수상작가	
프로필	대한민국명장 제695호 (도자공예)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졸업 이천도자기명장 현재)서광요 대표
공적사항	박병호 작가는 1987년 이천에 정착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청자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과 창작활동을 이어오던 중 2023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어 한국도예협회의 위상을 드높임.

한국도예협회 연혁

년, 월, 일	활 동 내 용
2009. 11. 30	한국도예협회 창립총회(국회 의원회관)
2009. 12	국외한식당 고품격화사업 발표회(LA, 뉴욕) - 한식세계화 식기류 활성화 방안 주제 - 주최 : 한국전통음식연구소(윤숙자 소장) 한국도예협회(윤태운 회장)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대사관
2010.4.8 ~ 11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신청사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 (후원:문화체육관광부)
2010. 5. 26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도예협회 법인설립인가
2010. 6. 3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도예협회 법인설립등기 필 (법인등록번호 134421-0000784)
2010. 6. 9	이천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126-82-11858)
2010. 6. 12~13	서울캠핑 페스티벌 도자문화 캠페인(서울시 후원)
2010. 10. 12~17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축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1. 6	경인일보 업무 협약
2011. 1. 29	2011 설맞이 전통장작가마 페스티벌 - 조선백자 달항아리, 대영제국 박물관이 말한다
2011. 3. 16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7개도 지부장과의 면담
2011. 7. 13~26	협회원 전시회 개최 인사동 M갤러리 (충북, 광주, 여주, 강원지부)
2011. 7. 30~31	한국도예협회 강진축제 개막식 참석
2011. 8. 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2011. 10. 1	‘불을 빚다’ 전통 장작가마 행사(광주 미도요)
2012. 2. 25	장작가마 행사(이천 엑스포장 내 전통 장작가마)
2013. 3. 28~31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기념 한국도자특별전”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사블랑카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3. 11. 16	전통 장작가마 재현행사. 경기광주 미도요
2014. 5. 31	협회창립 5주년 기념-전통 장작가마 행사
2014. 7	파라과이 밍가주시 도예학교 설립 요청공문 접수

2014. 8	밍가주 시장방문 - 도예학교 설립논의
2015. 4. 21~24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한국도자특별전” 장소: 미얀마 양곤 이벤트 파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미얀마 한국대사관, 코트라
2015. 8	‘일본자기탄생400년’한·일 백파선 기념사업회 창립 한국-윤탈운회장, 일본-시바다회장 (구보타의원, 시게토미 전의원 한국 방문)
2015. 9	“범국민 조선도공 기념사업회 결성”
2015. 10. 5	일본 아리타방문(윤탈운회장, 김영기사무총장)
2015. 10. 6	아리타시 초청 간담회 아리타시, 관련단체장 참석
2015. 11. 5	서울 사무실 개설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2015. 11. 27~28	구보타의원, 시게토미 전의원 한국 방문 (백파선 기념상 건립등 기념사업 협의)
2016. 2. 29	서울 사무실 개소식
2016. 3. 10	“범국민조선도공기념사업회 창립대회”-각 언론보도
2017. 12. 6~10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기념 한국도자특별전 개최(하노이)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한국대사관)
2018. 4. 29	조선도공 백파선 기념동상 설치 (일본 아리따)
2019	한국도예협회 정기총회 (제3대 이용백 신임회장 선출)
2020	한국도예협회 정기협회전 (한국공예관 갤러리 2-2)
2022, 8, 13~17	한국도예협회 정기협회전 (여주 백웅갤러리)
2023. 2, 10	한국도예협회 정기총회 (제4대 김기종 신임회장 선출)
2023. 2, 24~25	제51회 강진 청자축제 개막식 참석
2023. 7. 1~9. 30	한국도자재단 도예단체지원사업 도예가와 함께하는 나의“꿈” 나의“희망” 충북 지역아동센터 10곳 300여 학생참여
2023. 8. 25~26	한국도예협회 여름 하계캠프 1박 2일 (오창)
2023. 9. 15~16	전통가마 불 지피기 행사 (이천 전통가마실)
2023. 9. 1~10. 15	청주공예비엔날레 어마어마페스티벌 전시 및 워크숍 참여 (고대석, 김갑용, 김경동, 양동엽, 이희복, 한호현)
2023. 12. 12.~17	한국도예협회 정기협회전 (한국공예관 갤러리 2-2)